2023년도 전임교원 업적평정표

(2022.11.1 - 2023.10.31)

피평정자	성 명		직 급		평정자	총 장
	소 속		직 위			우 창 훈 (인)

평정영역	평 정 항 목 및 기 준	배점	득점			
			기본	가점	감점	계
학교발전기여 (가점 10점)	■ 학교발전기여: 기여도에 따라 차등 가점(상한 10점) □ 학교발전을 위해 총장의 명을 받아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□ 입시 충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우수한 경우 ※ 전체 배점인 100점 이내에만 적용					
1. 교육 및 연구영역 (40점)	※ 각 평가항목에서 취득한 점수를 누진한 후 해당점수 부여 □ 총 누진점수 40점 이상: 40점 □총 누진점수 40점 미만은 취득한 점수 부여	40				
	1-1 수업 1-1-1 강의평가 (15인 이하 강좌는 제외) □강의평가 평균점수율 X 15 1-1-2 담당 수업일수(2시간 이상일 때 수업일수 1일 인정) □5일 = 5점 □4일 = 3점 □3일 = -3점					
	1-2 전공(취업)동아리 지도 □포털에 활동결과서 70% 이상 지도 입력시 = 2점					
	1-3 등록율 및 산업체위탁반, 전공심화반 운영 1-3-1 등록유지율 [(당해년도 4/1 + 10/1 기준의 평균값)](학과단위평가) * 유지율 기준 : 100%에서 2% 마다 기준 부여 * 점수 기준 : 1. 100%를 15점으로 정하고 평균값 이상의 구간인 경우는 2%마다 1점씩 감소 2. 평균값 미만의 구간일 경우는 2%마다 2점씩 감소 (예시-평균 유지율이 93.5%일 경우) □100% 이상 = 15점 □98% 이상 = 14점 □96% 이상 = 13점 □94% 이상 = 12점 □92% 이상 = 11점 □90% 이상 = 9점 □88% 이상 = 7점 □86% 이상 = 5점 □84% 이상 = 3점 □82% 이상 = 1점 □82% 미만 = 0점 1-3-2 산업체위탁 별도반 또는 전공심화과정 운영학과 (학과단위 평가) = 3점 1-3-3 산업체위탁 별도반 또는 전공심화과정 운영인원 (학과단위 평가) □ 산업체위탁 별도반 운영인원 30명 이상 = 4점, 20명 이상 30명 미만 = 3점, 20명 미만 = 2점 □ 전공심화과정 운영인원 30명 이상 = 4점, 20명 이상 30명 미만 = 3점, 20명 미만 = 2점					
	1-4 중도 탈락율(개인 평가) □3% 이하 = 3점 □5% 이하 = 2점 □7% 이하 = 1점					
	1-5 LMS, 교수법 □과정평가형 교과목 운영시 = 2점 (학과단위) □LMS이용 강좌 운영 = 학기당 1점 (상한 2점) □신 교수법을 이용한 강좌 운영 = 과목당 1점 (학기당 상한 2점) □교수학습센터 학습지원프로그램 운영 = 프로그램당 1점 (학기당 상한 1점) [튜터링 프로그램] □교수학습센터 교수지원프로그램 참여 = 0.5점 (학기당 상한 1점) □티칭포트폴리오 작성 실적 = 과목당 2점 (학기당 상한 2점) □동행학습 7주 이상 지도 = 1팀 당 0.5점 (상한 3점)					
	1-6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율(학과단위 평가), 국가공인자격증포함 □20% 이상 = 1점 □30% 이상 = 2점 □40% 이상 = 3점					
	1-7 학사관리 1-7-1 성적평가시 A+ 및 A학점 비율 준수 여부 (감점) □45% 이상 -1점 감점 □50% 이상 -2점 감점 □55% 이상 -3점 감점 □60% 이상 -4점 감점 1-7-2 출석부 및 시험답안지 관리(학사관리지침에 의한 성적부여) (감점) □출석부, 답안지, 평가표 보관 □1항목이라도 미보관시 = -2점 □성적 정정 3건당 = -1점(감점 하한 -5점) ※ 정정기간내의 성적정정은 제외					

평정영역	평 정 항 목 및 기 준	배점	득 점			
			기본	가점	감점	계
	1-7-3 강의 이행상태(강의준비, 이행도) (감점) ① 강의계획서 임의 변경 실시 (1회당) = -1점 ② 강의계획서 기한 내 미입력 (과목별) = -1점 ③ 무단 결강·휴강 1회당(사전 승인 제외) = -2점 ④ 보강계획서에 의한 보강 미실시(1회당) = -2점 1-7-4 학사업무관련 제반 서류제출 및 시간표·성적 전산입력 실적 반영(연 2회 실시) (감점) ① 1~10회 지참 제출 □학과장 및 학과교수 = 0점 ② 11~20회 지참 제출 □학과장 및 학과교수 = -1점 ③ 21~30회 지참 제출 □학과장 및 학과교수 = -2점 ④ 31회 이상 지참 제출 □학과장 및 학과교수 = -3점					
	1-8 교외경연대회 수상 지도 (상한 5점) □전국규모대회 3위 이내 입상 = 3점 □광역자치단체 규모대회 3위 이내 입상 = 1점					
	1-9 교내외 행사지도 (상한 2점) □학술회의, 전시회, 발표회, 졸업작품전, 기술경연대회 등 1건당 = 1점					
	■연구실적 ※ 출판 종료된 것에 한함(해당년도 출판 및 게재예정증명서 유효) ※ 점수산출 : 실적율(%) × 배점 ※ 인정비율 = 1인 : 100%, 2인 : 70%, 3인 : 50%, 4인이상 : 30%					
	1-10 저(역)서 (※ ISBN(등록번호)이 부여되고, 150페이지 이상의 출판물로서, 최소 200권 이상 발행된 것을 원칙으로 함. 개정판은 불인정) 1-10-1 국외 전공관련전문학술서적 □100% = 10점, 초과분 = 5점 × 초과% 1-10-2 국내 전공관련전문학술서적 □100% = 8점, 초과분 = 4점 × 초과% 1-10-3 편저, 역서 □100% = 5점, 초과분 = 3점 × 초과%					
	1-11 논문 1-11-1 국내외 저명 학술지 (SCI(E)급) □100% = 10점, 초과분 = 5점 × 초과% 1-11-2 국내 전문학술지(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학회지)및 기타 국외 학술지(박사학위논문포함) □100% = 8점, 초과분 = 4점 × 초과% 1-11-3 기타 국내학술지(심사위원이 있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미등재학회지) □100% = 5점, 초과분 = 3점 × 초과% 1-11-4 교내 논문집 □100% = 4점, 초과분 = 2점 × 초과%					
	1-12 미술분야 연구(전시) 실적(팜플렛 등 증빙자료 원본제출) A : 국제 비엔날레, 국제 아트페어 및 저명 해외 갤러리 초대 개인전 □1회 = 10점, 초과분 = 5점 × 초과회수 B : 국제 개인전 □1회 = 8점, 초과분 = 4점 × 초과회수 C : 국내 개인전 □1회 = 6점, 초과분 = 3점 × 초과회수 D : 국제 단체전(초대전) □1회 = 4점, 초과분 = 2점 × 초과회수 E : 국내 단체전 □1회 = 2점, 초과분 = 1점 × 초과회수					

평정영역	평 정 항 목 및 기 준	배점	득 점			
			기본	가점	감점	계
	1-13 연극 영화분야 연구실적(팜플렛 등 증빙자료 원본제출)					
	A :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곳에서 공인된 연극 및 영화, 개인 연구 발표회					
	□1회 = 10점, 초과분 = 5점 × 초과회수					
	B : 공인된 장소 연출 발표회, 국외에서 인정된 연극, 영화공연의 주요 캐스트 및 주요 스텝					
	□1회 = 8점, 초과분 = 4점 × 초과회수					
	C : 국내에서 인정된 연극, 영화제 공연의 주요 캐스트 및 주요 스텝					
	□1회 = 6점, 초과분 = 3점 × 초과회수					
	D : 국가 및 공공기관 주최 연극, 영화제 참가					
	□1회 = 4점, 초과분 = 2점 × 초과회수					
	1-14 음악분야 연구실적(팜플렛 등 증빙자료 원본 제출)					
	A :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독창회, 독주회, 협주협연, 오페라 주역, 지휘, 초연, 창작곡발표					
	□1회 = 10점, 초과분 = 5점 × 초과회수					
	B : 국내에서 공인된 독창회, 독주회, 오페라 주역, 지휘, 초연, 창작곡 발표					
	□1회 = 8점, 초과분 = 4점 × 초과회수					
	C : 국내에서 공인된 협연, 2인음악회, 작품발표, 오페라 조역, 종합연주회의 중주 및 반주					
	□1회 = 6점, 초과분 = 3점 × 초과회수					
	D : 시 · 도 주최의 독주, 독창, 지휘, 음악 연구업적, 편곡 발표, 협연					
	□1회 = 4점, 초과분 = 2점 × 초과회수					
	1-15 체육분야 연구실적(팜플렛 등 증빙자료 원본 제출)					
	A : 국제경기의 임원, 국제경기의 감독, 국제경기의 출전선수 입상지도(1, 2, 3위), 국제공인경기 심판					
	□1회 = 10점, 초과분 = 5점 × 초과회수					
	B : 전국체전의 임원, 감독, 코치, 심판, 출전선수 입상지도(1, 2, 3위)					
	□1회 = 8점, 초과분 = 4점 × 초과회수					
	C : 전국대회의 임원, 감독, 코치, 심판					
	□1회 = 6점, 초과분 = 3점 × 초과회수					
	D : 시도대회의 임원, 감독, 코치, 심판					
	□1회 = 4점, 초과분 = 2점 × 초과회수					
	소계	40	0	0	0	**0**
2. 봉사활동 (20점)	**■ 봉사활동**	20				
	※ 각 평가항목에서 취득한 점수를 누진한 후 해당점수 부여					
	□ 총 누진점수 20점 이상: 20점 □총 누진점수 20점 미만은 취득한 점수 부여					
	2-1 입시					
	2-1-1 입학충원율(학과단위 평가)					
	□ 100% = 10점 □정원에서 1% 미충원마다 10점에서 0.5점씩 감점					
	□ 80% 미만 = 0점					
	2-1-2 입시설명회 및 기타 입시에 관한 출장 및 업무 협조(상한 5점)					
	□ 박람회 및 고등학교 입시설명회 참가 = 1점/회, 고교방문 입시출장 = 0.5점/회					
	2-1-3 산업체위탁생 유치 실적					
	□ 1인당 1점(상한 없음)					
	2-2 평생교육원 활동					
	2-2-1 평생교육원 일반과정 유치 실적					
	□10명 이상 = 4점 □6명 이상 = 3점 □3명 이상 = 2점 □1명 이상 = 1점					
	2-2-2 학점은행제 학위과정 유치 실적					
	□10명 이상 = 4점 □6명 이상 = 3점 □3명 이상 = 2점 □1명 이상 = 1점					
	2-3 특강					
	2-3-1 방학중 특강 및 학기중 평생교육원 개설 과목, 계절학기 □과목당 1점(학기별)					
	2-3-2 교내 전체 교수 또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 = 1점					

평정영역	평 정 항 목 및 기 준	배점	득 점			
			기본	가점	감점	계
	2-4 보직교원 2-4-1 보직교원 □행정처실장 = 7점 □부처장, 도서관장, 정보전산원장, 평생교육원장, 교육혁신원장, 입학관리본부장 = 5점 □사회봉사단장, 부본부장, 부원장, 부단장, 장학사정관, 행정과장, 센터장, 학과장 = 3점 □산학팀장(산학협력단), 부센터장, 부설연구소장 = 2점 ※ 보직 중복 = (1점추가, 상한1점)					
	2-5 장학금 · 학교발전 기부금 유치 2-5-1 장학금 유치 ※ 가족회사(산학협동 업체)·기타 업체 포함 □500만원 이상 = 3점 □300만원 이상 = 2점 □100만원 이상 = 1점 □신규업체 및 2년 연속 장학금 유치 = 업체당 0.5점 (상한 3점) 2-5-2 학교발전기금 유치 □500만원당 1점 부여					
	2-6 실험·실습소모품 및 행정비품 기증 ※ 소모품 : 1학기 이상 사용가능 품목 ※ 행정비품 : 3년 이상 사용가능 품목 □5000만원 이상 = 3점 □1000만원 이상 = 2점 □500만원 이상 = 1점					
	2-7 교외활동(총상한 3점) 2-7-1 정부 및 산하기관의 심사, 평가 및 자문위원 = 1기관 1점 2-7-2 정부 및 산하기관의 출제위원 - 기술국가(고시) = 1기관 1점 2-7-3 학회,협회,학술단체의 임원 활동 = 1점					
	2-8 사회봉사(총상한 3점) 2-8-1 사회 봉사활동 4시간당 = 1점 [학점 취득 연계 학생지도 봉사실적 제외] 2-8-2 학교홍보 활동(TV출연, 신문기고, 홍보물 번역 등) 실적 = 1점 2-8-3 지역사회단체와 협약 후 활동실적 4시간 당 = 1점 2-8-4 진로체험 봉사활동 1회당 = 1점					
	2-9 수범활동 : 상황에 따라 평가 2-9-1 학과운영협조 : □5점 □4점 □3점 ※ 교수평가(학과장) □5점 - 50% □4점 - 40% □3점 - 10% 학과장평가(교학처장) □5점 - 80% □4점 - 10% □3점 - 10% 2-9-2 학교제위원회 활동실적 = 위원회 별 1점 (상한 3점까지) 2-9-3 학교 발전 저해도(감점) : 저해 정도에 따라 5점까지 감점 □학교 명예훼손 □교원 품의손상 □제규정 위반 □기타 2-9-4 학생 지도결과 입력실적 [학기당 1인 기준 1회 / 학생 수 : 1학기(4월 1일), 2학기(10월 1일) 기준 : 1,2학기 합산 후 평균 산출] □95% 이상 = 3점 □90% 이상 = 2점 □90% 미만 = 0점 2-9-5 계속 심층상담 지도결과 입력실적[(학기당 1인 기준 2회 이상) : 1,2학기 합산 후 평균 산출] □40% 이상 = 2점 □20% 이상 = 1점 2-9-6 반지도교수(가점) □1개반 = 1점 □2개반 = 3점 □3개반 = 5점 □4개반 = 7점 2-9-7 성 관련 예방교육 학생 참여지도 실적 미달(감점, 학과단위 평가) □학생 교육 참여 이수율(4월 1일과 10월 1일 재학생수 평균 기준) 60% 미만은 -3점 2-9-8 교육만족도 조사 참여 실적(가점, 학과단위 평가) □부서에서 제시한 참여 기준 충족 시 = 1점 2-9-9 MVP역량인증스펙트럼시스템 내 진단검사(핵심역량, 직업기초역량, 진로적성검사, 종합심리검사) 참여실적 (학과단위 평가) □학생 진단검사 참여율 70% 이상 = 1점 2-9-10 MVP역량인증스펙트럼시스템 내 비교과프로그램 참여실적 (학과단위 평가) □부서에서 제시한 참여기준 충족시 = 1점 2-9-11 MVP핵심역량 인증실적(가점, 지도교수) □부서에서 제시한 인증율 충족시 = 1점					

평정영역	평 정 항 목 및 기 준	배점	득 점			
			기본	가점	감점	계
	2-10 상벌					
	2-10-1 수상, 서훈, 표창					
	□저명 학술상 = 3점 □대통령표창 이상 = 3점					
	□국무총리, 장관, 이사장, 총장 표창 = 2점(근속관련 제외)					
	□기타 공공기관 단체장 상 = 1점					
	2-10-2 징계(감점)					
	□정직 = -4점 □감봉 = -3점 □견책 = -2점					
	□허가받지 않은 해외여행 = -3점 □시말서, 경위서 제출 = -1점					
	소계	20	0	0	0	**0**
3.산학협력	※ 산학협력 평가항목은 산학협력 교육활동, 산학협력 연구활동, 산학협력봉사활동을 평가함	40				
(40점)	※ 각 평가항목에서 취득한 점수를 누진한 후 해당점수 부여					
	□ 총 누진점수 40점 이상: 40점 □총 누진점수 40점 미만은 취득한 점수 부여					
	※ 학생취업연계 개인실적 점수의 잉여분은 타영역 점수로 환산한다.					
	3-1 산학협력 교육활동					
	3-1-1 현장실습 이수율(학과단위 평가)					
	- 현장실습 선택학과					
	□50% 이상 = 7점 □30% 이상 = 5점 □10%이상 = 3점 □5% 이상 = 1점					
	- 현장실습 실시학과(의무학과)					
	□95% 이상 = 7점 □90% 이상 = 5점 □90% 미만 ~ 85%이상 = 3점 □85% 미만 ~ 80% 이상 = 1점					
	※ 현장실습 이수율 = (현장실습 이수자 수 / 졸업학년도 재학생 수(4월1일기준)) x 100%					
	※ 현장실습 이수자 수는 중복 인정 없음(1학기, 2학기 각각 실습에 참여한 학생은 1명으로 계산)					
	※ 현장실습은 4주 이상 연속 및 120시간 이상 실시한 경우만 인정					
	※ 실습 업체 협약, 실습계획서, 현장실습 순회지도 등 관련 서류 제출한 경우만 인정					
	※ 현장실습 의무학과의 경우 인증평가 기준을 충족시키고, 인증평가 관련서류로 대체 가능					
	※ 신설학과는 신입생이 졸업학년도에 도달할 때까지 4점/년 부여					
	3-1-2 캡스톤디자인 과목 지도(학과단위) : 2점					
	3-1-3 졸업작품전 참가(학과단위) : 2점					
	3-1-4 창업동아리 지도 : 3점/건(교,내외 창업관련 경연대회 참가 필수)					
	3-1-5 창업동아리 지도에 의한 학생창업(사업자 등록증 등 증빙서류) : 5점/건					
	3-1-6 산업체 재직자 교육 : 2점/건 (학교 공문 접수 및 제반서류 제출 경우에만 인정)					
	3-1-7 사회맞춤형, 협약학과, 계약학과, 교육과정 운영 : 개인, 학과의 경우					
	□ 과정운영 : 2점					
	□ 취업율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					
	① 70% 이상 = 3점 ② 70% 미만 ~ 60% 이상 = 2점 ③ 60% 미만 ~ 50% 이상 = 1점					
	3-2 산학협력 연구활동					
	3-2-1 정부, 기업과제 등(간접비 있는 경우) : 사업참여 개인 학과의 경우					
	가. 과제 신청 시 = 1점/건(상한 3점)					
	나. 과제 수행(간접비 기준)					
	□ 100만원 이하 = 2점 □ 200만원 이하 = 3점 □ 300만원 이하 = 4점					
	□ 400만원 이하 = 5점 □ 400만원 초과 = 6점					
	3-2-2 정부, 기업과제 등(간접비 없는 경우) : 사업참여 개인, 학과의 경우					
	가. 과제 신청 시 = 1점/건(상한 3점)					
	나. 과제 수행(사업 운영)					
	□ 사업비 5,000만원 이하 = 1점 □ 사업비 1억 이하 = 2점 □ 사업비 1억 초과 = 3점					
	3-2-3 산업체와의 공동특허 출원 = 1점/건, 기술이전, 산업체와의 공동 특허 등록 = 5점/건					
	3-2-4 교원창업(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) : 3점/건					
	3-3 산학협력 봉사활동					
	3-3-1 기술지도, 기업체 기술자문, 경영자문, 원스톱 기업지원 후 결과물, 신기술·신제품 인증지원					
	기술사업화 지도(R&BD) : 1점/건 (1개 회사 다수 지도는 1건으로 인정)					
	3-3-2 산학공동실습실 운영 및 기자재활용 실적					
	□ 1회 이상 : 1점 □ 3회 이상 : 2점					

평정영역	평 정 항 목 및 기 준	배점	득 점			
			기본	가점	감점	계
	3-3-3 산업체 기자재 유치실적 □ 1000만원 이상 : 1점 □ 2000만원 이상 : 2점 □ 3000만원 이상 : 3점 3-3-4 취업지도 ※ 교양과 교수는 지도교수 해당학과 교수와 동일점수 부여 (지도 해당학과가 없는 경우에는 평균취업율의 점수를 부여) ※ 신설학과 교수는 졸업생 배출시까지 4점/년 부여 가. 수도권 비교학과 평균취업률 비교(12/30 건보DB실적 기준, 과단위 평가) ① 수도권 비교학과 평균 취업률 이상 = 7점 ② 수도권 비교학과 평균 취업률 미만 ~ -2% 미만 = 3점 ③ 수도권 비교학과 평균 취업률 대비 -2% ~ -5% 미만 = 0점 ④ 수도권 비교학과 평균 취업률 대비 -5% ~ -8% 미만 = -1점 ⑤ 수도권 비교학과 평균 취업률 대비 -8% ~ -10% 미만 = -2점 ⑥ 수도권 비교학과 평균 취업률 대비 -10% 이상 저하 = -3점 ※ 수도권 비교학과가 2개 이하인 경우 학교평균 대비 평가함. 나. 이전 3년간 취업률 비교 평가(12/30 건보DB실적 기준, 과단위 평가) - 평정 적용년도 취업률이 학교 평균 취업률 이상 학과 ① 이전 3년간 평균 취업률 대비 2% 초과 또는 평정 대상 최근 년도 취업률 80% 이상 학과 = 7점 ② 이전 3년간 평균 취업률 대비 평균 이상 ~ 2% 미만 상승 = 6점 ③ 이전 3년간 평균 취업률 대비 평균 미만 ~ -2% 미만 하락 = 3점 ④ 이전 3년간 평균 취업률 대비 -2% ~ -4% 미만 하락 = 1점 ⑤ 이전 3년간 평균 취업률 대비 -4% ~ -7% 미만 하락 = -1점 ⑥ 이전 3년간 평균 취업률 대비 -7% ~ -10% 미만 하락 = -2점 ⑦ 이전 3년간 평균 취업률 대비 -10% 초과 하락 = -3점 - 평정 적용년도 취업률이 학교 평균 취업률 미만 학과 ① 이전 3년간 평균 취업률 대비 2% 초과 또는 평정 대상 최근 년도 취업률 80% 이상 학과 = 7점 ② 이전 3년간 평균 취업률 대비 평균 이상 ~ 2% 미만 상승 = 6점 ③ 이전 3년간 평균 취업률 대비 평균 미만 ~ -2% 미만 하락 = 0점 ④ 이전 3년간 평균 취업률 대비 -2% ~ -4% 미만 하락 = -1점 ⑤ 이전 3년간 평균 취업률 대비 -4% ~ -7% 미만 하락 = -2점 ⑥ 이전 3년간 평균 취업률 대비 -7% ~ -10% 미만 하락 = -3점 ⑦ 이전 3년간 평균 취업률 대비 -10% 초과 하락 = -4점 다. 학생취업연계(개인 실적, 건보DB실적 기준) □취업연계 1인당 1점 3-3-5 가족회사 유치 및 관리(가족회사 : 기존 산학협동업체의 명칭을 가족회사로 변경) 가. 가족회사 유치(개인평가) ① 1개업체 = 1점, 1개업체 추가당 0.5점 (최대 2점) 나. 가족회사 관리(과단위 평가) ① 현장실습 참여 ② 취업연계 실적 ③ 산업체겸임교원 임용실적 1개 해당 = 2점, 2개 해당 = 3점, 3개 해당 = 4점 ※ 교양과 지도교수도 해당 과단위 평가에 포함					
	3-4 기타 3-4-1 실험실습실 및 기자재 관리(감점) 불량시 1개 항목 당 : -1점 - 기자재 무단 반출자 및 해당과 학과장 - 기자재 망실자 및 해당과 학과장 - 기타 실험실습실 관리 소홀 등					
	소계	40	0	0	0	0
	합 계	100				

	작성자	(인)	**총 점**	
	확인자	(인)		